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137 제출연월일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,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,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」 (의안번호 제113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해당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어업자별·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·어선에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.
- 1. 최근 3년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실적
- 2. 최근 3년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
- 3.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제3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, 포획·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보고 절차"를 "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 및 포획·채취의 정지"로 한다.

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·채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에

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- 1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실적과 전재실적
- 2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」 제13조에 따른 양륙실적 제67조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분량 할당 등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하거나 제외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제38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어획량 실적과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·전재실적 및 양륙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그 배분량을 어업자별·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.

제3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7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개 정 아 제37조(총허용어획량의 할당) ① 제37조(총허용어획량의 할당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② 배분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 • 어선 을 고려하여 어업자별 · 어선별 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. 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. 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 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 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 는 실적이 없는 어업자 ㆍ 어선에 는 어업자 · 어선에 대하여는 배 대해서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 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. 할 수 있다. 1. 최근 3년간 「지속가능한 연 근해어업 발전법 제9조제1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한 어획실적과 전재 실적 2. 최근 3년간 「지속가능한 연 근해어업 발전법」 제13조에 따라 보고한 양륙실적 3.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 태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38조(배분량의 관리) ① ~ ③ 제38조(배분량의 관리) ① ~ ③ (생략) (현행과 같음)

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 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・채 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 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.

-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배분량의 공제, 포획ㆍ 채취의 정지 및 포획량의 보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- 제6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67조(벌칙) 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삭 제
 - 3.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 <삭 제>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

- ④ 제37조에 따라 할당된 배분 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·채 취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 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.
 - 1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 전법 | 제9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획실적 과 전재실적
 - 2. 「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 전법 : 제13조에 따른 양륙실 적
-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분 량의 공제 및 포획・채취의 정

1. (현행과 같음)

로 보고한 자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